

NCS교육지원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9.05.22. 개정 2020.05.14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NCS교육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05.14.>

제2조 (직무)

교육혁신팀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'NCS'라 한다)에 기반을 둔 학내 교육과정 개편과 적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0.05.14.>

1.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
2.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3. NCS기반 교육품질관리 및 교육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4. NCS기반 교육여건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5. 기타 NCS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 (위원회 설치 및 운영)

운영의 효율성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NCS 운영위원회 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NCS 전담교수 및 자문위원)

- ① NCS 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 NCS 교과 of 질적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1. 학과 NCS 교과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
 2. 학과 NCS 교과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
 3. 학과 NCS 교과운영 성과 및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
 4. 기타 학과 NCS관련 사항
- ② NCS 교과 of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로서 교육혁신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외부인사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 (시행세칙)

NCS교육지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NCS기반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.

부 칙(2020.05.1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